



국가의 지방 관여·통제 개선을 위한 법률정비 추진 방안

「도시개발법」·「지방자치법」·「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30년, 법률은 여전히 중앙 통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법률은 지방의 자치사무에도
중앙부처의 승인·협약·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승인



사전협의



보고



시정명령





“자치사무인데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개발, 조례 제정, 예산·결산,
지방정부 간 협력은 지방의 대표적인 자치사무입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가 승인하거나
보고를 요구하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어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치사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무





“불필요한 통제는 **삭제**하고, 필요한 정보는 **통보**로 바뀌야 합니다”

이번 연구는 지방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
중앙정부의 관여가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협의·보고’를 **‘통보’**로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칙 ①

불필요한 관여는 **삭제**



원칙 ②

보고·승인은 **통보**로 완화





“지역개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와 협약해야 할까요?”

현재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5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의 자치사무인 만큼
면적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국토부 협약 조항
→ 삭제





“조례와 예산까지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례·규칙의 제정과 폐지, 예산·결산,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구성 등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무입니다.
이에 중앙부처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통보’로 바꾸고, 승인·지도·감독 조항은
삭제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현행

보고
승인·지도·감독



개선

통보
삭제 또는 축소





“지방정부 간 협력조직도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지방정부가
광역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자율적인 협력조직입니다.

설치·규약 변경·해산 때마다 요구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권고는 줄이고,
지방정부 간 **합의**와 지방의회 **의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설치



규약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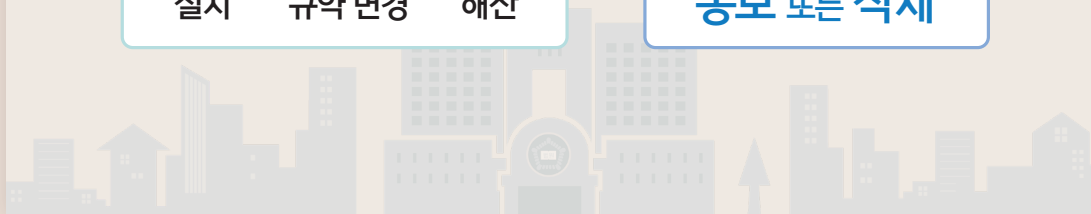
해산



행안부 승인



통보 또는 삭제





“마을정비구역이 20만 m^2 를 넘으면 중앙정부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20만 m^2 이상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개발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합니다.

관할 지역 내의 마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만 m^2 이상
마을정비구역



농식품부 사전협의
→ 삭제



결론

“중앙의 통제를 줄이고 지방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끄는 **협력자**이자 **동반자**입니다.
현행 법률 1,714건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승인·보고·명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법률 개정 과정에도
지방정부와 지방협의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 통제 최소화

지방 자율성·책임성 강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때
지방자치도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